



4. 그 밖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

③대학혁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5.2>

1. 세부 사업 항목의 변경 심의
2. 전체예산의 세부사업간 예산 조정 심의
3. 신규 사업의 추가 심의
4.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의 변경 심의
5. 자체 사업운영규정의 변경 심의
6.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

④대학혁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2.5.2>

**제5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)** ①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교무위원급으로 구성하되, 외부전문가, 재학생으로 구성하며,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.5.2>

②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영역별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.5.2>

③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5.2>

1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<개정 2022.5.2>
2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<개정 2022.5.2>
3. 사업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<개정 2022.5.2>
4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규정(지침) 수립 및 변경 <개정 2022.5.2>
5. 신규 사업 및 사업변경 계획 발의 <개정 2022.5.2>
6.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사항 <개정 2022.5.2>
7. 삭제 <2022.5.2.>

④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2.5.2>

**제6조(자체평가위원회)** ①자체평가위원회는 내부교직원, 외부 전문가 및 학생으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를 과반수(50%) 이상으로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.5.2>

②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실태 평가 및 자문
2.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 여부 평가 및 자문
3. 사업비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평가 및 자문
4. 결과보고에 따른 종합평가 및 자문
5. 그 밖의 사업평가에 관련된 주요 사항

**제7조(사업비관리위원회)** ①사업비관리위원회는 내부교직원으로 구성하며, 사업단장이

위촉한다. <신설 2022.5.2.>

②사업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22.5.2.>

1. 사업비 집행계획 및 현황 관리 <신설 2022.5.2.>
2.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관리 <신설 2022.5.2.>
3.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사항 <신설 2022.5.2.>

**제8조(예산편성및집행기준)** ①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교육부(한국연구재단) “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”를 따른다.

②사업비 집행절차는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업무편람을 따른다. 다만, 업무편람에서 제시하지 않은 업무는 대학의 회계집행 기준을 따른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,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,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고,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하고,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